

1. 개정이유

타 법령 개정 사항 및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외 및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한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산업”을 “기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중 “무급 노조전임자”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법」 제9조제1호 및 제9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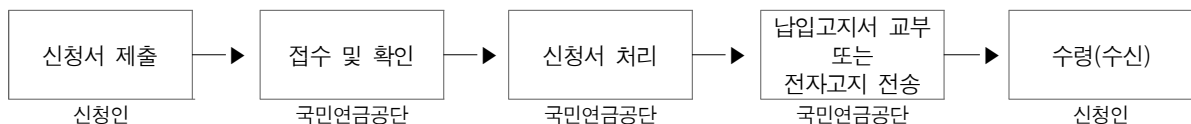
※ 만일,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 주소”란에는 “추납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납부예외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수감,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사업 중단·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기간을 적으십시오.
3. “적용제외기간”란에는 1999년 4월 1일 이후 팔호 안 대상자의 무소득배우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지급정지중인 자 제외), 국민연금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생계, 의료, 보장시설입소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4. “가입 전 군복무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추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추납희망기간”란에는 추납하고자 하는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6. “납부방법”란에는 희망하는 납부방법을 적으시되,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희망 횟수를 적으십시오.
※ 분할납부의 경우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7.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우편(e-mail)”란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8. “자동이체 신청”란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수협 등의 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금액에 비하여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동 잔액에 대하여는 출금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사항은 당월 자동이체신청 마감일까지 처리된 경우 당월분부터 적용되며, 해지 시에는 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완료 또는 사망, 노령연금 지급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직권으로 해지 처리합니다.
- 출금은 해당 납부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의 거래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자 정보(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는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처리절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개시 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항목	변경일(YYYY.MM.DD)	변 경 내 용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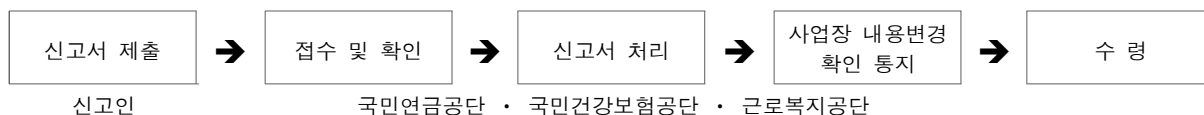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 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되,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을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처리절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 내용			
			연월일 (YYYY.MM.DD)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용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 · 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 · 의료 · 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
 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 · 산재보험만 해당) 7. 자격상실일자(국민
 연금 · 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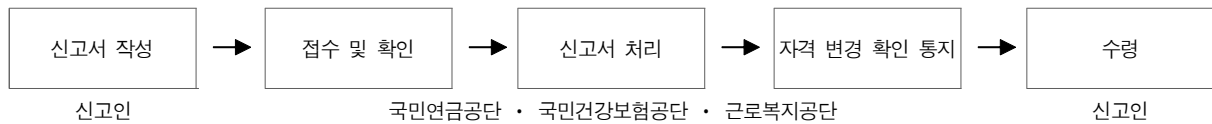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국민연금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선납 잔액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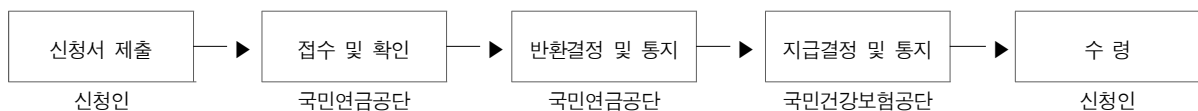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